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535호
2. 발 의 자 : 왕정순 의원(찬성자 25명)
3. 발의일자 : 2025년 0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 II . 제안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이나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8호 신설).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3).

###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됨.

### 2.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필요성

-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운영됨(참고자료1).
-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및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방식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와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임의가입과 보험료 전액 자부담 방식임.
- 그리고 이러한 임의가입 구조 및 보험료 자부담으로 인해 2021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함(참고자료2).<sup>1)</sup>
- 또한 소상공인이 속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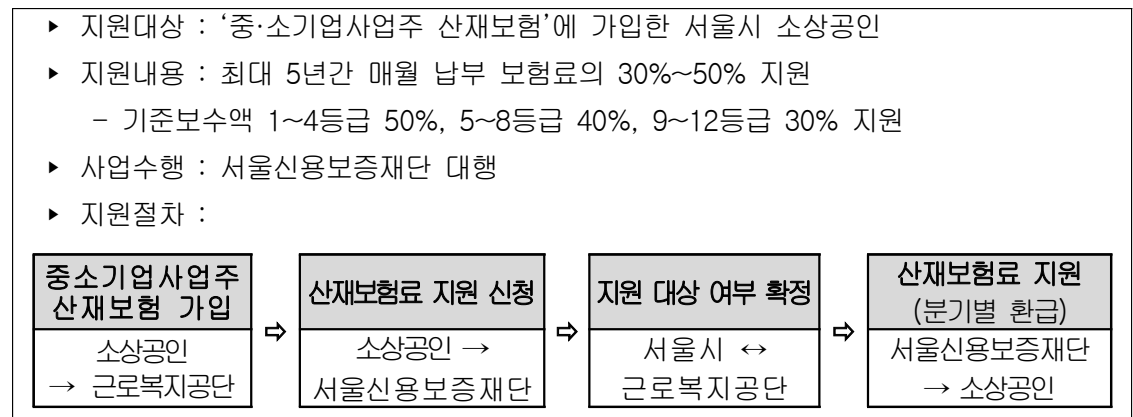
---

1) 서울시는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을 0.375%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2023년 말 기준)와 소상공인 수(2021년 말 기준)의 측정 시점이 달라 가입률 산정에 오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동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률을 인용함.

비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참고자료2).

- 이에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sup>2)</sup>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sup>3)</sup>, 이에 서울수도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함.

### <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개요 >



-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 <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지원사업 현황 >

| 구분        | 지방자치단체 | 지원시작일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광역<br>(6) | 경상남도   | 2020.1.1.  | 1인 자영업자 | • 30% ~ 50%(3년) |
|           | 경상북도   | 2023.11.3. | 1인 자영업자 | • 전 등급 40%(1년)  |
|           | 대전광역시  | 2021.1.1.  | 1인 자영업자 | • 전 등급 50%(3년)  |
|           | 강원도    | 2019.1.1.  | 1인 자영업자 | • 전등급 50%       |
|           | 부산광역시  | 2020.1.1.  | 모든 소상공인 | • 30% ~ 50%(3년) |
|           | 광주광역시  | 2021.9.1.  | 1인 자영업자 | • 30% ~ 50%(3년) |
| 기초<br>(1) | 곡성군    | 2021.3.1.  | 1인 자영업자 | • 30% ~ 50%(3년)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미편성함.

### 3.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의 근거 마련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안 제8조제8호)하고 영세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에 산재보험 지원을 명시(안 제10조의3)함.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7의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8. (생략)</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p> <p>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시장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p> <p>3. 임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p> |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p> <p>-----.</p> <p>1. ~ 7의2. (현행과 같음)</p> <p>8. <u>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시장은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p> |

- 먼저 안 제8조제8호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산재보험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또한 안 제10조의3은 영세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특히 산재보험은 서울시가 기추진 중인 고용보험과 함께 소상공인의 업무상 재해와 폐업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5년도 본예산에 이미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라<sup>4)</sup>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입법조사관 | 연락처          |
|-------|--------------|
| 김용우   | 02-2180-8062 |
| 김혜진   | 02-2180-8057 |

4)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참고자료 1] 산재보험 제도개요

### □ 산재보험 비교

| 구분   | 근로자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
| 가입대상 | · 모든 근로자          |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가입의무 | · 의무가입            | · 임의가입<br>(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선택) |
| 보험료  | ·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
| 시행시기 | · 1964년           | · 2008년                       |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임의가입)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보험료율 :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 2024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20호)

### □ 산업재해 범위 및 보험급여

-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 < 산업재해의 종류 >

- ▶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회사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보상방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로 인정된 사유(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에 따라 8가지 보험급여 내 신청하며, 급여는 재해발생 손해 전체 보상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 방식임.

< 보험급여 종류 >

|            |                                                                              |
|------------|------------------------------------------------------------------------------|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해등급별 급여 지급                                   |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 52~67% 상당) 매월 지급                     |
| 상병보상<br>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 장례비        |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 직업생활<br>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                        |



## [참고자료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률 및 산업재해 현황

□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률( '21): 0.62%(48,103명/7,712천명)

| 구분                                            |                        | '18              | '19              | '20              | '21              | '22                | '23.7         |
|-----------------------------------------------|------------------------|------------------|------------------|------------------|------------------|--------------------|---------------|
| ①대상 중소기업수<br>(천개, 300인 미만)<br>* ~'19년: 50인 미만 |                        | 6,611            | 6,863            | 7,258            | 7,712            | * '국가통계포털'에<br>미등재 |               |
| 가<br>업<br>주                                   | ②중소기업 사업주(명)<br>②/①(%) | 25,041<br>(0.38) | 31,568<br>(0.46) | 39,359<br>(0.54) | 48,103<br>(0.62) | 51,174<br>(-)      | 50,249<br>(-) |
|                                               | 근로자 있는 사업주             | 18,382           | 21,152           | 23,283           | 25,729           | 26,672             | 26,607        |
|                                               | 근로자 없는 사업주             | 5317             | 10,416           | 16,076           | 22,374           | 24,502             | 23,672        |
|                                               | ③무보수 가족종사자(명)          | -                | -                | -                | 902              | 2,182              | 2,814         |
|                                               | 합계(②+③)                | 25,041           | 31,568           | 39,359           | 49,005           | 53,356             | 53,063        |

\*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사업연보'('18~'20), 고용노동부('21~'23.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가공

□ '10인미만 사업장' 재해요양자 비중( '21, 전체사업장 대비): 43.8%(53,789명/122,713명)

| 구분  | 계       | 5인<br>미만      | 5~9인          | 10~29<br>인 | 3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999인 | 1,000인<br>이상 |
|-----|---------|---------------|---------------|------------|--------|--------|----------|----------|----------|--------------|
| '17 | 89,848  | 29,597        | 15,037        | 20,598     | 7,294  | 6,066  | 5,408    | 1,624    | 1,521    | 2,703        |
| '18 | 102,305 | 32,568        | 15,992        | 23,347     | 8,215  | 7,116  | 7,217    | 2,317    | 2,183    | 3,350        |
| '19 | 109,242 | 34,522        | 15,872        | 24,629     | 8,655  | 7,825  | 8,263    | 2,645    | 2,710    | 4,121        |
| '20 | 108,379 | 33,862        | 15,480        | 23,290     | 8,278  | 8,073  | 8,933    | 3,054    | 3,126    | 4,283        |
| '21 | 122,713 | <b>37,267</b> | <b>16,522</b> | 25,920     | 9,467  | 9,653  | 11,341   | 3,403    | 3,139    | 6,001        |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 가공

□ '10인미만 사업장' 재해사망자 비중( '21, 전체사업장 대비): 38.5%(801명/2,080명)

| 구분  | 계     | 5인<br>미만   | 5~9<br>인   | 10~29인 | 3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999인 | 1,000인<br>이상 |
|-----|-------|------------|------------|--------|--------|--------|----------|----------|----------|--------------|
| '17 | 1,957 | 416        | 223        | 359    | 150    | 190    | 245      | 106      | 177      | 91           |
| '18 | 2,142 | 479        | 224        | 399    | 183    | 170    | 295      | 136      | 153      | 103          |
| '19 | 2,020 | 494        | 221        | 380    | 150    | 180    | 240      | 113      | 158      | 84           |
| '20 | 2,062 | 500        | 228        | 394    | 181    | 160    | 260      | 93       | 162      | 84           |
| '21 | 2,080 | <b>567</b> | <b>234</b> | 406    | 152    | 174    | 210      | 88       | 141      | 108          |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 가공

(출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인용)